#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07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전용기·김남국·김병주

박용진 · 신정훈 · 오영환

유정주 · 윤재갑 · 이병훈

이상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 법률 제 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중 "임금을"을 "임금, 승진 또는 경력평가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 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의 기관 중 공기업체·공단체(公團體)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 등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법 시 행 당시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 함한다)의 호봉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신 설> 「병역법」 제2조에 따른 현 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 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승선근 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 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 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 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② |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 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 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 -- 임금, 승진 또는 경력평가를 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 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의 기관 중 공기 업체·공단체(公團體)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 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